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25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위성곤·허 영·이상직

김진애・박 정・박재호

이워택 • 유재갑 • 민홍철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·등록,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·사용강요 금지,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, 장례식장영 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,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 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 임(안 제28조의2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).

법률 제 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2항 중 "교육,"을 "교육,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,"으로, "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8항"을 "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-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한다.
- 1.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- 2. 장례의식의 내용
- 3.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
- 4.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
- 5.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
- 6.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

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
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29조제8항"을 "제29조제9항"으로 한다.

4의2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

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의7(종전의 제12호의6) 중 "제29조제8항"을 "제29조제9항"으로 한다.

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공설장례식장의 설치	제28조의2(공설장례식장의 설치
· 운영) ① (생 략)	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	②
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, 가격표	
의 게시·등록, 게시한 가격 외	
의 금품징수 및 구매・사용강	
요 금지, <u>교육</u> , 거래명세서의	교육, 계약체결 전 계
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	약내용 설명,
부터 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8	
<u>항</u> 을 준용한다.	-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
	<u>까지의 규정</u>
제29조(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)	제29조(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
	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
	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
	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
	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	1.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(법인
	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
	<u>말한다)</u>
	<u>2. 장례의식의 내용</u>
	3.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

⑧ (생 략)

- ⑨ 제4항 및 <u>제8항</u>에 따라 게 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 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 준 등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한다.
- 제32조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 시장등은 장 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- 5. <u>제29조제8항</u>을 위반하여 거

<u>시설</u>
4.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
<u>7]</u>
5.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
6.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
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
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하는 사항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<u> ⑩제9항</u>
제32조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
시정명령 등) ①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
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
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
5. 제29조제9항
<u> </u>

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• ③ (생 략)

제4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 다만, 제35조제1항에따라 과징금(과징금으로 갈음할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)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2의5. (생 략) <신 설>

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 자 12의7. (생 략)

13. (생략)

②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42조(과태료) ①
·
1. ~ 12의5. (현행과 같음)
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
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
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
12의7. 제29조제9항
<u>12의8.</u> (현행 제12호의7과 같
<u>ㅇ</u>)
1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